

사 천 시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



선 람	기 관 의 장

제477호 2016. 11. 24(목)

고 시

- 사천시 고시 제2016-242호 공유수면 점용·사용 승인사항 고시 ----- 2

공 고

- 사천시 공고 제2016-1055호 경남 사천선인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의견청취
공람·공고 ----- 6

회 람	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: 사천시 / 편집 : 공보감사담당관 / ☎ 831-2216 / FAX 831-6012

사 천 시 공 보

제477호(2)

고 시

사천시 고시 제2016-242호

공유수면 점용·사용 승인사항 고시

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6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유수면 점용·사용 승인사항을 고시합니다.

2016. 11. 24.

사 천 시 장

1. 점용·사용 승인번호 : 제2016 - 7호
2. 점용·사용 승인 연월일 : 2016년 11월 16일
3. 점용·사용의 목적
 - 선진~신촌간 연안정비사업[호안(피복석) 설치]
4. 점용·사용의 장소
 - 경남 사천시 신촌리 지선 공유수면
5. 점용·사용의 면적 : 5,216㎡ (직접 5,216㎡)
6. 점용·사용의 기간 : 2016년 11월 16일 ~ 2046년 11월 15일 (30년)
7. 점용·사용 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·주소
 - 가. 성 명 : 사천시장(해양수산과장)
 - 나. 주 소 :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
8. 점용·사용의 승인조건 : 붙임 참조

사 천 시 공 보

제477호(3)

승 인 조 건

1. **승인목적 준수** : 피승인자는 승인목적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승인목적과 다르게 공유수면을 점용·사용할 수 없습니다.
2. **승인내용 변경시 사전 변경승인** : 피승인자가 면적, 기간 등 본 승인내용을 변경하여 점용·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
3. **본 승인 관련 해역이용협의 및 해양오염방지 대책 이행 등**
 - 가. 해역이용 협의서에 제시된 저감 방안을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- 나. 사업예정지 주변해역은 유속이 느리고 저서생물에 유기오염 지표종인 *H.filiformis*(버들갯지렁이류)가 우점하고 있어, 공사로 인해 수질 및 퇴적물 오염이 우려되므로,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오염물질 유입 증가 시 공사 강도를 조절하는 등의 대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합니다.
 - 다. 공사로 인해 추가적인 침식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 이를 대비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하며, 자연경관을 보호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공법으로 공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.
 - 라. 공사 시 부유사의 확산범위와 영향정도를 면밀하게 파악하여 적정 규격 및 규모의 오탉방지막을 적절하게 배치하여 운용하고, 오탉방지막의 성능 유지를 위하여 오탉방지막 일일점검대장을 작성하고 파손·훼손 및 기능 저하 사항 발견 시 지체 없이 유지·보수하여야 합니다.
 - 마.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공사자재 등이 인근해역으로 유출될 수 있으므로 강우 시 공사일정 조정 등의 대책을 수립·시행하여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합니다.
 - 바. 공사 및 시설물 운용 시 시설물 및 주변해역에 각종 폐기물 등을 방치하거나 무단 투기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, 주기적으로 시설물 및 주변 해역을 청소하여 깨끗한 해양환경을 유지하여야 합니다.
 - 사. 동 시설물 운용과 관련한 해역이용 이해당사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, 문제 제기 시 적극적인 해결대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.

사 천 시 공 보

제477호(4)

4. **문화재 관련** : 공사 중 매장문화재가 확인될 경우 「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에 따라 발견 즉시, 그 현상을 변경하지 말고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.
5. **환경 관련**
 - 가. 토공사 및 정지공사면적이 1,000㎡ 이상이므로 공사 착공전에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.
 - 나. 「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」 제21조제1항 별표9의 건설기계장비(굴삭기, 브레이커 등)를 5일 이상 사용할 경우 공사 착공전에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하여야 합니다.
6. **지시사항 준수 및 이행** : 타 법령에 의한 신고 및 인·허가 사항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관련 법령에 의한 인·허가 등의 절차를 거쳐야하며, 타 법령이 정하는 준수사항 등은 철저히 이행하여야 합니다.
7. **시설물의 관리**
 - 가. 설치구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안전대책 등 안전사고에 대비한 대책을 철저히 점검·시행하여야 하며,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.
 - 나. 설치구조물의 파손이 있을 경우 피승인자의 부담으로 시설보수, 안전대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.
 - 다. 시설물 주변 경관 및 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합니다.
8. **허가사항 취소 또는 행정처분**
 - 가. 공유수면관리법령과 승인조건 및 관련 법령에 의한 관리청의 지시사항을 위반한 때 또는 장래 산업단지 지정 및 공유수면 매립 등을 위한 국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청은 본 승인을 취소하거나 필요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고, 이 처분으로 인해 피승인자가 입는 손실 및 손해에 대하여는 관리청에게 일절 보상이나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.

사 천 시 공 보

제477호(5)

나. 공공 또는 공익사업 등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연장 사용승인신청을 불승인할 수 있으며, 불승인 처분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이나 관리청의 지시에 대하여 피승인자는 일체의 보상이나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.

9. **공유수면의 원상회복** : 본 승인기간이 만료되거나 점·사용이 폐지된 경우 또는 승인이 취소된 때에는 공유수면에 설치된 공작물을 제거하고 당해 공유수면을 피승인자 스스로의 부담으로 원상회복하여야 하며, 동 사업과 관련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.
10. **승인 기간 만료시 연장신청 등** : 승인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일의 **60일** 전부터 **30일** 전까지 관련법령에 따른 적합한 서류를 구비하여 변경승인(기간연장) 신청하여야 합니다.
11. **민원 해결 등** : 동 공유수면 점·사용으로 인하여 어업권자 등 권리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민원사항 등이 발생 할 경우 피승인자가 보상 또는 민원을 전담하여 해결하여야 합니다.
12. **승인조건의 이행** : 위 승인조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피승인자는 본 승인증을 받은 후 2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, 동 기간 중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본 승인조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. 끝.

사 천 시 공 보

제477호(6)

공 고

경상남도 사천시 공고 제2016 - 1055호

경남 사천선인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공람·공고

1.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선인리, 평화리, 정동면 화암리, 고읍리 일원에 경남 사천선인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하여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. 관계도서는 열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으니 본 지구 지정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열람장소에서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6년 11월 24일

경상남도 사천시장

1. 지구개요

가. 지구명 : 경남 사천선인 공공주택지구

나. 위 치 :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선인리, 평화리, 정동면 화암리, 고읍리 일원

다. 면 적 : 512,844m²

라. 행위제한 등

1) 근거 :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

사 천 시 공 보

제477호(7)

2)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·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의 공고가 있는 지역 및 주택지구 안에서 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허가를 하려면 미리 공공주택사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가) 건축물의 건축 등: 「건축법」 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(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)의 건축,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

나) 인공 시설물의 설치: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(「건축법」 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)의 설치

다) 토지의 형질변경: 절토(切土), 성토(盛土), 정지(整地), 포장(鋪裝)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,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행위

라) 토석의 채취: 흙, 모래, 자갈, 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(제3호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

마) 토지의 분할·합병

바)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: 옮기기 쉽지 않은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

사) 죽목(竹木)을 베거나 심는 행위

3)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11조제2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

2. 도시관리계획사항 : 녹지지역 (생산녹지지역, 자연녹지지역), 농림지역

3. 지구지정 제안자(공공주택사업자) : 한국토지주택공사

4. 열람 및 의견제출기간 : 2016. 11. 24 ~ 2016. 12. 08

5. 열람장소 : 경상남도 사천시청 건축과, 사천읍사무소, 정동면사무소

6. 열람도서 : 게재생략 (열람장소에 비치)

7. 기타

가. 열람장소에 비치된 관련도서 열람후 기간내 서면으로 의견제출

사 천 시 공 보

제477호(8)

나. 열람사항은 개별통보하지 않고 본 공고로 갈음함을 알려드립니다.

다. 본 열람내용은 최종결정 내용이 아니며, 결정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라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천시청 건축과(☎ 055-831-3219), 사천읍사무소(☎ 055-831-5021), 정동면사무소(☎ 055-831-5051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끝.